

## I. 제조물 결함의 개념

자료제공 · 한국PL센터

### 제조상의 하자과 설계상의 하자

원고(이용자)측이 승소하기 위한 요건의 첫 번째는 문제가 된 제조물의 상태·품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재판관(또는 배심원)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물책임(PL)소송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인 셈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결함」의 의미이다.

일반 용어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그 물건에 요구되는 표준품질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품질」을 말하지만, 제조물책임상에서 「결함」이라는 경우는 다음 1가지 단계를 기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1단계 - 사고원인이 되었던 것은 제조물의 속성(상태·품질)이었는지 명백히 한다.
- 제2단계 - 그것이 특정 기준에 합치되지 않았을 경우(표준품질에 미적합)의 인정여부를 명백히 한다.

더 나아가 법률상으로는 제조물의 상태·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자」라고 하고, 하자의 정도가 그 제조물의 표준품질 이하인 경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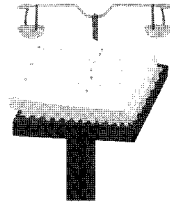
「결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자에는 「제조상의 하자」와 「설계상의 하자」 2종류가 있다.

「제조상 하자」란,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일련의 생산물의 일부제품이 다른 대다수 제조물이 도달하고 있는 표준품질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용기의 라벨의 부착실수, 용접불량, 연결볼트의 치수차이, 금속 중의 이물질 혼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조단계에서 생기는 하자인 경우로 아무리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라도 이 제조상 하자의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

「설계상 하자」란 설계단계에서 생기는 하자를 말한다. 동일설계에 의한 제품, 또는 동일구조의 제품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모양의 하자가 제품 각각에 발생된다.

이처럼 하자에는 2종류가 있지만 「제조상의 하자」와 「설계상의 하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 소송의 경우에 「제조상의 하자」와 「설계상의 하자」의 구별은 실제 거의 없다.



소송의 경우 「하자」가 제조상의 문제든지 설계상의 문제든지 그것에 근거한 법적 책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PL)법하에서의 「제조상의 결함」을 고려할 경우에는 결함이 발생한 과정·원인을 묻지 않고 그 제조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과실책임」이 문제시 되기 시작한 이유는,

「과실책임하에서 피고(제조자)측이 승소한 경우, 원고(이용자)측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이용자)가 제조공정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피고(제조자)측이 제조공정에 관한 입증 방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책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의견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다루는 소송영역에서 「무과실책임의 법리」가 발전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고(제조자)의 내부적 기준이 아니고 객관

적인 기준이 아니면 안된다.

이 기준에 관해 주의해야 할 것은 「무과실(엄격)책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와 「과실책임 법리」의 경우에 차이가 있어 상식을 초월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 원고(이용자)의 행위·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제조물에 상식을 초월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은 「설계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당연 설계변경을 하거나 경고를 표시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판은 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중요한 한가지 포인트가 「위험성」과 「유용성」이라는 “비교형량의 방법론”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 4에서 설명한다.

### 비교형량의 방법

제조물의 「위험성」과 「유용성」과의 비교형량의 방법론은 제조물책임소송의 상징적인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회전의자는 이용자가 의자를 내릴 필요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갖고 있지만 그 반면 일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일반의자와 마찬가지로 주의하지 않고 앉으려고 한다면 위험이 따른다.

대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은 그것을 미리 이해한 후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 즉 회전의자라는 「유용성」을 상품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용성」과 「위험성」의 비교형량이 감안되고 있는 셈

이다.

제조물책임의 사고방식에서는 실제로 이용자가 제조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의 존재 여부를 문제시 한다. 그리고 원고(이용자)측의 주장이 사회일반상식으로 수용되는 것인가, 일탈하는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회전 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판사례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다음 사항을 말할 수 있다.

① 메이커가 그 생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코스트 부담이 안전성을 상회하고, 제조원가가 대폭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제조물은 상당한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조물의 위험성이 그 유용성을 상회하면 그것은 상식을 상회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때의 판단은 PL 특유의 것으로 숫자나 문서로서 나타내기 어렵기에 기업으로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으로서는 설계나 상품화 결정(판단)까지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서 제3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경고 및 지시

### 1) 「경고」와 「지시」의 구별

경고와 지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경고 : 제품이 잘못 사용된 경우의 위험성

과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

② 지시 : 이용자에게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

### 2) 경고 · 지시와 판례

PL법하에서는 엄격한 제조 · 설계기준을 만족한 제조물이라도 경고나 지시가 불충분할 경우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제품의 사용 방법이나 오용결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명확한 「경고 · 지시」가 있으면 제품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고 큰 설계변경도 필요치 않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위험에의 대처방법으로 메이커의 설계 · 제조부문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메이커의 영업관계자는 「경고」가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모든 예상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로써 표시하기를 주저하는 경향도 있다.

메이커는 「경고」를 부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조물책임소송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을까? 즉 「경고」를 함으로써 메이커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제품의 성격, 위험상태, 사용자의 제품에 관한 지식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완구 등의 제품에서 어린이가 경고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경고」보다도 설계변경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